

(앞쪽)

승강기 운행정지

이 승강기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다.

상호(건물명):

승강기번호:

운행정지 기간:

운행정지 사유: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1. 바탕: 노란색
2. 글자: 검은색
3. 사선: 붉은색
4. 크기: 320mm × 220mm
5. 종이질: 백상지(150g/㎡)

(뒤쪽)

[안 내]

이 "승강기 운행정지 표지"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.